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411
----------	------

제출년월일 : 2009년 1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개정이유

-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조금 지원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축제추진위원회 '경비의 지원 등' 조항 신설(제11조)

3. 개정근거 : 자방자치법 제22조, 제116조의 2, 지방재정법 제17조

4. 의안전문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 : 붙임

첨 부 1. 의안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련법령 1부.

4.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1조(경비의 지원 등)</u> ①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p>
<u>제11조(기타 운영세칙 제정) (생 략)</u>	<u>제12조(기타 운영세칙 제정) (현행과 같음)</u>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09.4.1] [법률 제9577호, 2009.4.1, 일부개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 자치단체 관련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 제12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축제 운영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 경비를 지원 받은 수탁운영자는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1조(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음성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0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축제계획을 수립하고 그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규정한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행사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 제10조(행사지원 경비) ①군수는 위원회에 축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조사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함평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원활한 축제 추진을 위하여 축제경비 지출에 대한 간사 전결규정을 둘 수 있다.

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행사지원경비) 군수는 축제와 관련된 연구 용역 조사나 그밖에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단법인 안동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과 축제준비 및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천시 공고 제 2009 - 1473호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1. 26.

제 천 시 장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조금 지원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축제추진위원회 '경비의 지원 등' 조항 신설(제11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2월 15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5123, FAX 641-5149, 담당자: 하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실무관	축제영상팀장	문화관광과장			
주무관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09-1473호
3. 공고기간 : 2009. 11. 26. ~ 12. 15. (20일)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별도붙임
6. 공고결과
 - 조회수 : 88명
 - 의견제시자 : 없음

▶ 임 : 공고안 1부.(별지) 끝.